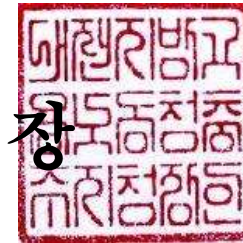
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에게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·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2. 1. 10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
	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김○이	1981.11.02.	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40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 통지	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취업활동계획 미이행 및 지정된 상담일에 불출석(2021.11.29.) 하여 1차(2021.12.13.), 2차 (2021.12.29.) 방문 상담 출석 통지를 하였으나, 지정된 날짜 에 출석하지 않음.	○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○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	수취인부재 · 폐문부재

4. 공고기간: 2022. 1. 10. ~ 2022. 1. 24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음성고용센터 김성중(Tel. 043-880-86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